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8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교통유발량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 계수를 신설하고, 서울시 나눔카 활성화 3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민간 시설물 내 나눔카 배치 유도수단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계수 중 데이터센터 항목 계수 신설

- 별표2의 교통유발계수에서 방송통신시설(대분류) 하에 데이터센터(세분류)를 신설하고, 0.82의 계수 설정

나.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

- 나눔카의 정의를 규정한 제2조4호아목 및 이행기준, 경감비율을 규정한 별표1의 '나눔카이용' 란을 삭제
- 나눔카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경감신청서, 경감률 결정통보서 등 별지1~3호 서식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있음(원안의결)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4. 13. ~ 5. 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교통정책실 교통정책과 조하람(☎2133-2229)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아목을 삭제한다.

별표1의 나눔카 이용란을 삭제한다.

별표2 제15호 중 나란 아래에 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데이터센터	0.82
---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나눔카이용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유발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2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아목, 별표1,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u>감축 프로그램</u>”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p> <p>가. ~ 사. (생략)</p> <p><u>아. 나눔카 이용 : 시장이 지정 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를 위한 주차면을 배치하고 업무 공유카 또는 일반이용을 유도 하는 것</u></p> <p>③ ~ ④ (생략)</p> <p>[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프로그램</th> <th style="width: 10%;">대상</th> <th style="width: 60%;">이행기준</th> <th style="width: 20%;">최대경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나눔카 이용</td> <td style="text-align: center;">종사자 이용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단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치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td> </tr> </tbody> </table> <p>[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p>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단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치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별표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프로그램</th> <th style="width: 10%;">대상</th> <th style="width: 60%;">이행기준</th> <th style="width: 20%;">최대경감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 height: 80px;"><u>삭 제</u></td> </tr> </tbody> </table> <p>[별표2]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4조제2항 관련)</p>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삭 제</u>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카 주차면을 제공하고 업무공유카 이용(업무를 위한 이용) 또는 일반시민 이용 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해 경감 (단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배치에 대한 이용실적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부담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u>삭 제</u>																	

현행					개정안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신 설					15	방송통신 시설	다	데이터센터	0.8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신 청 여 부	세부사항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신 청 여 부	세부사항	
나눔카이용	15		계약업체 : 나눔카(일반차량) 배치 대수 : 나눔카(전기차) 배치 대수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여부 : O, X		삭 제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이 행 계 획 서 신 청 내 용	경 감 신 청	비 고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이 행 계 획 서 신 청 내 용	경 감 신 청	비 고
나눔카 이용	15				삭 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비 고	프 로 그 램	최 대 경 감 (%)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비 고
나눔카 이용	15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하향으로 인한 세입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데이터센터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하향 적용(1.00→0.82)로 인한 세입감소분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현재 데이터센터를 대신하여 적용하는 전신전화국의 계수를 적용받는 시설물의 부담금 전체 규모가 약 965백만 원으로, 계수 하향 시 약 174백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1호에 해당

4. 작성자

교통정책과 주무관 조하람(2133-2229)